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뜻이다



백 원 기

-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 인천대학교 법대 교수

지난해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조인양성 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 토론회와 학술세미나”를 6회 개최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라도 터주기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3일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그 대안으로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그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또 ‘향후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연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앞으로 4년간 법학교육은 더욱더 침체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과대학의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결정은 4년 후 사법시험의 중국적인 폐지를 전제로 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그 폐지를 단순히 유예하는 조처에 불과하며 4년간 불필요하게 국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3가지 대안 중 첫번째 방안은 일본이 도입한 예비시험제도로서 이미 실패한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사시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세번째 방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를 고비용화하고 결국 ‘옥상옥(屋上屋)’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85.4%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면서, 이를 4년간 유예하여 “대한민국 법조인양성 제도”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확정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에 대하여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로스쿨 학생들은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국민들의 눈초리가 무서워 이

를 철회하고 말았다. 지난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이 7년간 병존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마치 앞으로 4년간 병존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로스쿨의 폐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가 “로스쿨의 개혁 방안”을 언급한 만큼 로스쿨협의회는 그 진정한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발에 대하여 법무부가 그 입장을 반복한 듯한 의견을 다시 표명했으나 장관이 그 입장이 최종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여 원래 발표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제58회를 맞은 사법시험은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으로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등용문이다. 국민들은 '시험에서 교육으로'라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안착되어 법조인양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그 운영은 많은 부정적이고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을 바라는데 기존 4년 법과대학과 유사한 커리큘럼과 3년 교육의 로스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본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법시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법조지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년 대학원 과정인 현행 로스쿨은 매우 고비용구조이다. 이로 인해 서민층은 법조지역에 감히 도전해 볼 엄두를 내기 어렵다. 미국과는 달리 영미법의 모국인 영국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독일과 일본은 이를 도입해 실패했으나, 대륙법의 모국인 프랑스는 공직 사법관과 민간직 변호사를 따로 뽑는 2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둘째로,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동안 단 한번도 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다. 사법시험은 우리 사회 공정성의 대명사이다. 이는 법무부가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객관적 성적의 산출과 그 공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로스쿨은 그 입출구에서 많은 의문에 쌓여 있다. 주요 로스쿨일수록 이른바 학벌주의는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도 많은 잡음을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현대판 음서제'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로, 사법시험은 법학의 발전과 법치사회의 기반이다. 곧 현행 로스쿨은 학부법학교육의 완전한 부정 위에 서있다. 이대로 사법시험이 사라지면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법과 대학과 법학과의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법학의 전수기능은 물론 전공과 교양교육을 통한 법학의 가치는 훼손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시험의 폐지를 그나마 4년간 유예하게 만든 것은 그동안 꾸준히 그 존치를 위하여 노력해 온 대한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지적인 “로스쿨 재학생의 자퇴 사태”와 “로스쿨 교수들의 변시 출제거부 사태”를 목도하면서 처절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로스쿨 제도 자체가 아니라 법조인양성 제도가 로스쿨 체제로 1원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사법시험은 반드시 로스쿨 제도의 약점을 보충하는 필수적인 보완제가 되어야 한다. 또 법조인 양성의 경우 선의의 경쟁체제가 이루어져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무부의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 존치를 바라고 있다. 국회는 그 존치를 위해 발의되어 현재 법사위 심의하고 있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